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및 아스팔트”를, “, 아스팔트 및 항공유”로 한다.

제47조제1항제1호 중 “및 아스팔트”를, “, 아스팔트 및 항공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신·구 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)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등유, 경유, 용제, 중유, 부생연료유, 석유가스, 윤활유[그리스(grease)를 포함하며,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] 및 <u>아스팔트</u> 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은 제외한다.	제28조(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, 아스팔트 및 항공유</u>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제47조(수수료)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자동차용 휘발유, 등유, 경유, 중유, 부생연료유, 석유가스, 용제 및 <u>아스팔트</u> : 리터당 0.6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. ~ 4. (생략) ② ~ ③ (생략)	제47조(수수료) ①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<u>, 아스팔트 및 항공유</u> : ----- -----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